
제2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
(2024년~2026년)



●●● 목 차 ●●●

I. 추진개요	1
II.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보수 수준	2
III. 비전 및 전략	3
IV. 추진과제 주요내용	4
1. 보수 수준 향상	4
2. 일·생활 균형 지원	6
3. 인권·안전 보장	10
4. 역량강화 및 사기 진작	12
5. 처우개선 협력 강화	15
V. 행정사항	16
참고(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 현황)	17

제2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 [2024년~2026년]

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계획 수립으로 도민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.

I. 추진개요

1 추진근거

-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 제3조
- 「전라남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

주요 내용

-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, 복지증진, 지위향상 등을 위한 노력
- 사회복지사 등 보수의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 준수 노력
- 3년마다 보수수준 등 실태조사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

2 추진방향

- '23. 3월부터 추진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용역 결과 및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종합계획 수립
 - 안전·인권 보호, 전문교육 강화, 일·생활 균형, 민·관 협력 강화 중심의 신규사업 발굴 및 기존 사업 확대·홍보
-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권고기준 준수를 위한 지도·점검 강화
 - 지방이양시설 100% 준수, 국고지원시설 정부지원 확대 건의
 - 종사자 최대 요구사항인 단일 임금체계 구축은 장기적 검토사항으로 향후, 시설별 직무분석 후 단일화 가능 여부 결정

Ⅱ.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보수 수준

○ 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 : 시설 12,432개소, 종사자 51,300명

구분	시설수(개소)				종사자수(명)			
	계	국고지원	지방이양	장기요양	계	국고지원	지방이양	장기요양
계	12,432	1,581	9,494	1,357	51,300	13,455	2,686	35,159
생활	516	89	110	317	8,162	1,111	1,238	5,813
이용	11,916	1,492	9,384	1,040	43,138	12,344	1,448	29,346

【인건비 지원 기준 분류】

- * 국고지원(국비지원) 시설 : 인건비를 국비 전액 또는 일부 지원(지방비 매칭)하는 시설
- * 지방이양(도비지원) 시설 : 인건비를 도비, 시군비로 지원하는 시설
- * 장기요양기관 : ‘노인장기요양보험법’에 의거 인건비가 지원되는 시설(국·도비 미지원)

○ 사회복지시설 중 인건비(국·도비) 지원시설* : 834개소, 5,294명

- (국고지원) 580개소 2,740명 / (지방이양) 254개소 2,554명

구분	시설수(개소)			종사자수(명)		
	계	국고지원	지방이양	계	국고지원	지방이양
계	834	580	254	5,294	2,740	2,554
생활	179	89	90	2,276	1,111	1,165
이용	655	491	164	3,018	1,629	1,389

- * 경로당·노인교실(9,217개소), 「영유아보육법」에 의한 어린이집(999개소),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‘노인의료복지시설’과 ‘재가노인복지시설’(1,357개소), 미지원시설(25개소) 제외

○ 보수 수준(지방이양시설) :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% 준수

- ('22. 12월말 기준) 전국 대비, 전남도를 포함한 6개 시·도*의 지방이양시설은 기본급 권고 기준 100% 준수 (복지부 조사결과)

- * 서울 108.2%, 광주 100.1%, 인천·대전·세종·전남 100%, 그 외 평균 99.4% 수준

- ('23. 9월말 기준) 전남도 지방이양시설의 기본급 권고 기준 준수율은 평균 100%*(전남도 조사결과)

- * 생활시설 99.7%, 사회·노인복지관(이용시설) 102.7%, 장애인복지관(이용시설) 100%

Ⅲ. 비전 및 전략

비전

종사자의 삶의 질 개선으로 **행복한 복지공동체** 실현

추진 전략

세 부 과 제

보수 수준 향상

- ① 인건비 권고 기준 준수율 점검
- ② 시설 유형별 종사자 직무 분석
- ③ 생활·이용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
- ④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

일·생활 균형 지원

- ① 배우자 출산휴가 운영 ② 건강검진 공가제 운영
- ③ 장기근속휴가제 운영 ④ 자녀돌봄휴가 운영
- ⑤ 유급병가 지원 ⑥ 대체인력지원사업 확대
- ⑦ 가족친화기업 인증 권고

인권·안전 보장

- ① 사회복지사 등 인권보호 법률 자문
- ② 정신건강 전문 상담 지원 ③ 위기대응 매뉴얼 개발보급
- ④ 폭력피해 예방 캠페인 및 보호장비 보급
- ⑤ 종사자 현장 노무 컨설팅 ⑥ 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

역량강화 및 사기진작

- ① 장기근속 종사자 도지사 공로패 증정
- ② 전담형 사회서비스 교육망 구축
- ③ 근로기준법 등 교육 ④ 힐링 프로그램 운영
- ⑤ 직무역량 강화 교육 ⑥ 보수교육비 지원
- ⑦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⑧ 원격평생교육시설 운영
- ⑨ 처우개선 우수시설 인센티브 제공

처우개선 협력강화

- ① 처우개선 정보공유망 구축 운영
- ② 민·관 협력 현안의제 토론
- ③ 소수직 종사자 현안의제 토론
- ④ 돌봄종사자 통합지원센터 운영

Ⅳ. 추진과제 주요내용

1 보수 수준 향상

1-1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를 점검 (신규)

- 보건복지부 인건비 권고 기준 준수를 위한 시·군 지도 점검

○ 큰 거 : 「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 제3조

제3조(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,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 3. 28.>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,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<신설 2018. 12. 11.>

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,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·공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12. 11.>

⑤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·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. <개정 2018. 12. 11.>

○ 대 상 : 인건비(국·도비) 지원시설 정규직 종사자

○ 내 용 :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를 매년 점검·공유

- 지방이양시설 : 복지부 기본급 권고 기준 100% 준수 독려
- 국고지원시설 : 인건비 준수율이 100%에 못미치는 상황을 감안하여 정부 기본급 인상 건의 활동 지속 추진
- 복지부 기본급 권고기준을 우선 적용하되, 수당 기준 등은 개별 시설 유형과 시·군 예산사정 등에 따라 별도로 마련 가능

* 호봉제 미적용 시설 등 인건비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시설의 경우는 종사자 수, 이용자 수 등 시설의 규모에 따라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 지급기준을 시설별 개별지침에 명시 가능

1-2 시설 유형별 종사자 직무 분석 [신규]

- 시설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단일임금체계 적용 가능성 분석

○ 대 상 : 인건비(국·도비) 지원시설 정규직 종사자

○ 단일임금 적용 필요성

- 시설 유형별·직렬별(사회복지직, 의료직, 사무직, 관리직) 임금체계의 단일화로 차별성 해소
- 기본급 비중을 높이고 수당체계를 단순화하여 안정적인 보수기반 확보

○ 선행과제 : 시설 규모(종사자 수), 종사자 경력만을 기준으로 '동일가치 노동, 동일임금' 수준을 적용하기에는 면밀한 검토 필요

⇒ 시설 유형별 종사자 직무분석 후 단일화 가능여부 결정

- 시설유형별(생활, 이용), 직렬별(사회복지직, 그 외) 직급 매칭의 형평성
- 업무량 및 난이도를 반영한 차별없는 단일임금 체계의 가능성
- 단일임금체계 적용 시 인건비 인상액 예측 및 예산 확보 대책 등

○ 방 법 : 전남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과제 연계 추진('24.~'25.)

1-3 생활·이용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 [계속]

- 종사자 특별수당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보수 수준 현실화 기여

○ 대 상 : 인건비(국·도비) 지원시설 정규직 종사자

○ 지급기준 : 생활시설 월 12만원/인, 이용시설 월 9만원/인

1-4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 [계속]

- 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을 통한 처우개선 및 서비스 향상

○ 대 상 : 노인요양시설 정규직 종사자

○ 지급기준 : 특별수당 월 5만원(연 60만원)/인

2

일·생활 균형 지원

2-1 배우자 출산 휴가제도 운영 [신규]

■ 종사자의 배우자 및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통한 일·생활 균형 지원

- 근 거 :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2
- 대 상 : 인건비(국·도비) 지원시설 정규직 종사자
- 내 용 : 배우자의 출산을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휴가 지원
- 사용방법 :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0일 이내 휴가 사용,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

2-2 건강검진 공가제도 운영 [신규]

■ 건강관리 및 질병예방을 통한 종사자의 건강기본권 보장

- 근 거 :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29조(일반건강진단) 및 제175조(과태료)

(전문 노무사 의견) 사업주가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, 건강검진일의 유급처리 여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,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 정한 바에 따름. 다만, 「산업안전보건법」상 근로자의 건강검진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됨.

- 대 상 :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대상자
- 사 용 일 :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건강검진 당일
 - ※ 2차(재검) 검진의 경우 공가 대상이 아님
- 사용방법 : 건강검진일 이전에 시설장의 승인을 거쳐 사용

- ◆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5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 주기가 서로 상이할 경우 일반 건강검진과 암검진 당일 각각 공가 사용(내시경, 조영, 조직검사 포함한 암검진 시 전일공가, 내시경 미포함 암검진 시 반일공가 사용 가능 / 유방촬영, 분변잠혈검사, 간암혈액검사, 자궁경부세포검사 등은 반일 공가 사용)
- ◆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 주기가 일치할 경우 전일공가 1일 사용하며,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가급적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을 동시 실시 권장

2-3 장기근속 휴가제도 운영 (계속)

- 종사자의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 실시로 장기근속 유도 및 소진 완화

- 대 상 : 인건비(국·도비) 지원시설 근무경력 10년 이상 장기근속자
 - 동일 사회복지시설에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한하며, 인사발령에 따른 동일법인 소속시설 재직기간은 합산(법인근무경력은 제외)

- 내 용 : 장기 근속기간에 따른 아래의 유급휴가 일수 지원

근속기간	10년 이상 20년 미만	20년 이상 30년 미만	30년 이상
휴가일수	5일	10일	10일

※ 휴가일수 10일 이상에 한해 업무공백을 고려해 5일씩 분할 사용 가능

- 사용기간 : 다음 장기휴가 발생일 전까지 사용, 경과 시 소멸

2-4 자녀돌봄휴가 운영 (계속)

- 일·가정 양립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자녀가 있는 종사자 돌봄휴가 지원

- 근 거 :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의2

- 대 상 : 영·유아, 초·중고 자녀를 둔 인건비(국·도비) 지원시설 정규직 종사자

- 내 용 : 고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연 2일(16시간) 이내
휴가 지원 * 자녀가 3명 이상은 연간 3일(24시간) 이내

- 사용방법 : 시간 단위로 분할 신청 가능

- 적용기준 : 아래 사항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

- 영유아보육법(어린이집), 유아교육법(유치원), 초·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의 공식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
- 자녀의 병원진료(감염병 예방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영유아 건강검진 포함)에 동행하는 경우

- 증빙서류 : 가정통신문, 병원진료 진단서·진료 확인서·소견서 등

2-5 유급병가 지원 [계속]

- 질병으로 인한 고용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근로환경 제공

○ 대 상 : 인건비(국·도비) 지원시설 정규직 종사자

○ 내 용 : 연 60일 범위 내 유급병가 지원

- 지방이양 : 각 시설에 기 편성된 '보조금 內 인건비' 사용
 - 병가로 인한 인력 공백인 전남도 대체인력지원사업 활용
- 국고시설 : 道 대체인력 지원사업 예산으로 지원(道 생활임금 수준)
 - 대 상 : 개별지침에 유급병가 규정이 없거나, 그 기간이 60일 미만의 국고지원시설에 근무하는 무급병가 정규직 종사자
- 지원기준 : 유급병가일 × 1일 단가(봉급의 일할계산 금액)
 - ※ 봉급의 일할계산 상한액은 道 생활임금(1일)을 초과할 수 없음
 - ※ 관공서 공휴일 제외 30일 이상 병가 지속시 휴가일수에 관공서 공휴일 산입
 - ※ 업무상 질병(부상)의 산재보험 등 인건비와 유사성격의 지원과는 중복불가

○ 병가사유 : 아래의 사유로 입원, 수술, 통원치료가 명시된 의사진단서* 또는 진료확인서가 있는 경우

-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
- 전염병에 걸려서 그 종사자의 출근이 다른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(의사진단서로만 가능)
- 통원치료는 입원·수술과 관련된 사유에 한해 가능(입원 및 수술 내용 기재된 증빙서류 제출)

* 「의료법」 제17조(진단서 등) 및 「같은 법 시행규칙」 제9조(진단서의 기재사항)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기 위한 명확한 내용 기재(병명, 발병·진단 연월일, 치료내용, 입·퇴원 연월일 등)

2-6 대체인력 지원 사업 [확대]

■ 종사자의 업무공백 부담을 최소화하여 휴가 사용 활성화

- 대 상 :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
 - 단,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등 소관 생활시설 우선,
 -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‘어린이집’ 및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‘장기요양기관’ 제외
- 내 용 : 병가, 휴가, 교육, 경조사, 출산 등으로 돌봄·조리인력의 업무공백 발생시 인력 파견
- 운영방법 : 대체인력 채용 및 파견 관리 *국고사업 지침 준용
 - 지원일수 : 1인당 연속 7일 이내
 - 신청방법 : 대체인력 근무 개시일 최소 2주일 전까지 신청(단, 병가·조사·출산의 경우 확인 후 당일 접수 가능)
 - * 사회복지정보시스템(ww.4wc.go.kr)을 통해 신청(문의 : 061-277-9838)
 - 파견절차 : 기존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 참조
 - 인력확대 : (‘23.) 43명(상근직 23, 단기직 20) → (‘24.) 46명(상근직 26, 단기직 20)
- 수행기관 :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

2-7 가족친화기업 인증 권고 [신규]

■ 가족친화인증 적극 권고를 통한 일·생활 균형 문화 정착

- 대 상 :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
- 내 용 :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, 유연근무제도,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에 인증 부여
- 인증주체 : 여성가족부장관
- 신청방법 :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(www.ffsb.kr)
 - * 인증 컨설팅 지원 : 전남여성가족재단(문의 : 061-260-7353)
- 인증혜택 : 처우개선 우수시설 인센티브(1백만원 내외) 우선 지급

3

인권·안전 보장

3-1 사회복지사 등 인권보호 법률 자문 [신규]

- 이용자 및 가족, 기관장 등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해결을 위한 전문변호사 지원

- 대 상 : 사회복지시설 전 종사자
- 내 용 : 사회복지 현장의 악성민원, 인권 침해 등에 원활한 법적 대응을 위한 전문변호사 1:1 매칭 지원
- 수행기관 :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
 - 이용방법 : 전남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내 인권보호 플랫폼을 통한 시설 종사자 개별 신청('24년 하반기 시행 예정)

3-2 정신건강 전문 상담 지원 [신규]

- 직무외상 스트레스 회복 지원을 통해 업무능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

- 대 상 : 사회복지시설 전 종사자
- 내 용 : 전문상담사를 연계하여 1:1 상담 진행(대면·비대면) 상담
 - 참여자 1인 기준(최소 3회 ~ 최대 10회 상담 지원)
- 수행기관 :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(문의 : 061-287-8140)

3-3 위기 대응 매뉴얼 개발·보급 [확대]

- 업무 중 발생하는 폭력피해 예방과 대응방안 마련으로 안전한 직무환경 제공

- 대 상 : 사회복지시설 전 종사자
- 내 용 : 종사자의 근무환경 위험관리 대응 및 예방관리 방안 등
 - 유형별, 시설별 맞춤형 위기대응 매뉴얼 개발·보급(온라인 병행 보급)
 - '23년도 매뉴얼 게재 : 전라남도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(협회소식란)
- 수행기관 : 전라남도사회복지사협회(문의 : 061-287-5650)

3-4 폭력예방 캠페인 및 보호장비 보급 **[확대]**

- 업무 중 발생하는 폭력피해의 적극적 대응을 위한 종사자 보호장비 보급

- 대 상 :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
- 내 용 : 종사자 폭력피해 예방 캠페인 및 보호장비 지원
 - (예방 캠페인) 폭력예방 교육, 캠페인 전개(배지, 스티커, 포스터 배부)
 - (장 비 지 원) 비상벨(휴대용 포함), 녹음 전화기 등
- 수행기관 : 전라남도사회복지협의회(문의 : 061-287-8955)

3-5 종사자 현장 노무 컨설팅 **[확대]**

- 다양한 노무 분쟁 등에서 종사자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 등 지원

- 대 상 : 사회복지시설 전 종사자
- 내 용 :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일어나는 노무 문제 및 권익침해 사례에 대해 전문 노무사를 통한 노무상담 진행
- 수행기관 :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(문의 : 061-287-8140)

3-6 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 **[계속]**

- 업무 상 발생할 수 있는 예상하지 못한 상해 사고 대비

- 대 상 : 인건비(국·도비) 지원시설 종사자(정규직, 비정규직*)
* (비정규직) 주5일 40시간 이상 근무자(단기간 근로자, 바우처 등 사업인력제외)
- 방 법 : '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' 제도를 통하여 지원
- 내 용 : 상해보험 가입비 10천원(1인당 자부담분) 지원
- 보장내용 : 상해사고로 인한 입원이나 골절·화상 진단을 받은 경우, 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도 중복 보장 가능
- 수행기관 : 한국사회복지공제회(문의 : 02-3775-8899)

4

역량강화 및 사기진작

4-1 장기근속 종사자 도지사 공로패 증정 [신규]

- 지역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한 시설 종사자의 노고 치하

- 대 상 : 사회복지시설 전 종사자
- 주요내용 :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서 30년 이상 장기근속한 종사자에게 도지사 공로패 증정
- 수행기관 : 전라남도사회복지협의회('24년 하반기 시행예정)

4-2 전남형 사회서비스 교육망 구축 [신규]

- 지역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 제작·운영으로 종사자의 실질적 역량강화 도모

- 대 상 : 사회복지시설 전 종사자
- 주요내용 : 보건복지인재원 등 타기관 콘텐츠(36건) 공유·운영 및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자체 교육과정 개설·운영
 - 전남형 과정 : 응급안전안심거점, 노인맞춤돌봄, 아동지원센터(운전사·상담원·이용자편), 지역사회투자사업 종사자 역량강화 등
- 수행기관 :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(문의 : 061-287-8140)

4-3 근로기준법·인사노무 등 교육 [신규]

- 종사자의 기본적 근무환경 보장을 위한 관련 법률 이해 등 교육 제공

- 대 상 : 사회복지시설 전 종사자
- 주요내용 :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되는 관련 법률안 교육
 - 안전관리 및 인사노무 등 종사자 보호관련 교육
 - 현장 수요조사를 통해 현장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
- 수행기관 :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(문의 : 061-287-8140)

4-4 맞춤형 힐링 프로그램 운영 [확대]

- 감정 노동으로 인한 정신건강 장애 예방 프로그램 운영

- 대 상 : 사회복지시설 전 종사자
- 지원기준 : 하위직급 미참여자 우선 선발
- 내 용 : 소진예방 프로그램 개발, 주기적 운영(분기별, 유형별)
 - 종사자 자존감 고취를 위한 전문강의 및 도내 문화공연 관람 지원
 - 종사자 본인과 그 가족의 전남도내 여행(1일 숙박) 지원
- 수행기관 :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(문의 : 061-287-8140)

4-5 직무역량 강화 교육 [계속]

- 종사자 욕구에 부응하는 교육콘텐츠 개발 및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

- 대 상 : 사회복지시설 전 종사자
- 주요내용 : 교육 콘텐츠 개발, 맞춤형 교육 제공
 - 직무역량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및 커리큘럼 개발·운영
- 수행기관 : 3개 기관
 - *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, 전라남도사회복지사협회, 전라남도사회복지협의회

4-6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[계속]

- 사회복지종사자의 직무능력 유지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비 지원

- 대 상 :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(5천명, 교육의무대상자에 한함)
- 지원내용 : 사회복지사 법정 의무 보수교육비 전액 지원
 -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 수강(1인 56천원 / 1시간 당 7천원 기준)
 - * 지원 기준액 미만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 실 교육비 지원
- 지원방법 : 사회복지사가 先 납부한 보수교육비를 사후 지원
- 수행기관 : 22개 시장·군수(관할 시군에 신청)

4-7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개최 [계속]

- 실질적인 사기진작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기념행사 개최
- 대 상 : 사회복지시설 전 종사자
- 내 용 :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
 - 식전공연, 기념영상 상영, 퍼포먼스, 참여 행사 등 다양화
- 수행기관 : 전라남도사회복지협의회(문의 : 061-287-8955)

4-8 원격평생교육시설 운영 [계속]

- 비대면 교육 수요와 교육 확대 욕구에 기반한 원격교육 지원
- 대 상 : 사회복지시설 전 종사자
- 방 법 : 상시적 비대면 교육 전환 및 신규과정 개발
 -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등 전문교육기관 교육과정 임대 운영 등
- 수행기관 :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(문의 : 061-287-8140)

4-9 처우개선 우수시설 인센티브 제공 [계속]

- 시설의 자발적인 종사자 처우개선 유도과 우수사례 발굴·전파
- 목 적 : 처우개선 정책 발굴·활용을 위한 시설 우수사례 공모
- 대 상 : 인건비 지원(국·도비) 시설
- 내 용 : 처우개선 우수사례 공모를 통한 시설 선정(매년 10여개소)
 - 개소당 300천원 ~ 1,500천원 까지 순위별 인센티브 차등 지급
- 수행기관 : 전라남도사회복지협의회(문의 : 061-287-8955)
- 시 상 식 : 사회복지의날 기념행사 연계 시상식 개최

5

처우개선 협력 강화

5-1 처우개선 정보공유망 구축·운영 [신규]

- 처우개선 종합계획 홍보 확대 및 시·군별 처우개선 정보 등 공유망 구축

- 대 상 : 사회복지시설 전 종사자
- 내 용 : 처우개선 주요사업 및 시설별 우수사례 등 온라인 공유
 -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및 시설별 준수 현황
 - 시·군의 처우개선 우수사례(복지포인트 지급 등) 및 관련 법률상의 의무적 휴가제도 공유 등
- 수행기관 : 전라남도사회복지사협회('24년 하반기 시행예정)

5-2 민·관 협력 현안의제 토론 [신규]

- 시설 종사자와 소관 공무원 간의 업무수행 소통체계 마련

- 대 상 : 사회복지시설 전 종사자 및 시·군 공무원
- 내 용 : 시설 종사자와 시·군 공무원 간의 소통의 장 마련
 - '24년도 하반기 시범 운영 후 확대(분기별 실시 등) 여부 결정
- 수행기관 : 전라남도사회복지사협회('24년 하반기 시행예정)

5-3 소수직 종사자 현안의제 토론 [신규]

- 소수직 종사자의 상호이해 및 교육의 장 마련

- 대 상 : 사회복지사를 제외한 시설 종사자
 - 간호사, 물리치료사, 기능직 등
- 내 용 : 타 시설 종사자 간의 업무교류 및 네트워크 확대의 장 마련
- 수행기관 : 전라남도사회복지협의회('24년 하반기 시행예정)

5-4 돌봄종사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**(확대)**

- 돌봄종사자에 대한 권리보호, 고충상담, 역량강화 등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

- 대 상 : 장기요양요원 등 돌봄종사자
- 내 용 : 권리침해 상담·지원, 역량강화 교육, 건강관리, 구인·구직 정보 제공, 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
 - 권익향상 : 돌봄 현장 전문 공인노무사 상담 지원
 - 역량강화 :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교육 등록 추진,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
 - 인식개선 : 따뜻한 돌봄 사진·수기 공모전, 캠페인 진행 등
- 수행기관 :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(문의 : 061-287-8672)

V. 행정사항

- 지방이양시설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: '24. 1. ~
-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급휴가 보조금 내 집행 : 지속
 - ※ 각 시설(지방이양시설)에 기 편성된 '보조금 內 인건비' 사용
- 종사자 처우개선 민·관·정 협의체('처우개선 위원회') 운영 : 지속

참 고

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 현황(인건비 지원시설)

(단위 : 개소, 명)

이용대상	시설종류	구분	시설수	종사자수	이용대상	시설종류	구분	시설수	종사자수
계	총계		834	5,294	아동	아동양육시설	지방	22	601
	지방이양시설	지방	254	2,554		아동보호치료시설	지방	1	12
	국고지원시설	국고	580	2,740		자립지원시설	지방	1	2
노인	양로시설	지방	10	135		공동생활가정	국고	34	125
	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	국고	2	9		공동생활가정 (학대피해아동쉼터)	국고	9	52
	노인복지관	지방	28	269		가정위탁지원센터	지방	2	22
	노인보호전문기관	국고	2	17		지역아동센터	국고	374	850
	노인일자리지원기관	지방	11	61		아동보호전문기관	국고	4	75
장애인	장애유형별거주시설(법인)	국고	14	397		다함께돌봄센터	국고	42	87
	중증장애인거주시설(법인)	국고	8	233	성매매 피해 지원	일반지원시설	국고	2	11
	장애유형별거주시설(개인)	지방	16	204		청소년지원시설	국고	1	3
	장애인단기거주시설	지방	5	24		자활지원센터	국고	1	6
	장애인공동생활가정	지방	20	26		성매매피해상담소	국고	3	15
	피해장애인쉼터	국고	1	5	성폭력 피해 보호	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	국고	2	14
	장애인복지관	지방	18	440		성폭력피해상담소	국고	7	29
	장애인주간보호시설	지방	27	152	가정 폭력 지원	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	국고	4	27
	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	지방	21	79		가정폭력상담소	국고	8	38
	수어통역센터	지방	21	89		긴급전화센터	국고	1	18
	점자도서관	지방	1	5	한부모	모자가족복지시설 (기본, 공동, 자립)	지방	2	9
	직업재활시설	지방	22	128		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(기본, 공동)	지방	3	10
	장애인생산물판매시설	국고	1	6	다문화 건강 가정	가족센터(다문화가족지원센 터, 건강가정지원센터)	국고	23	339
정신 질환자	정신요양시설	국고	4	176	청소년	청소년쉼터	국고	4	24
	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	지방	3	21					
노숙인 등	노숙인재활시설	지방	5	101	이주 여성	폭력피해이주여성쉼터	국고	3	18
	노숙인요양시설	지방	2	20		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	국고	1	6
지역 주민	사회복지관	지방	13	144					
기타 시설	결핵 한센시설	국고	1	17					
	지역자활센터	국고	23	134					
	전남광역자활센터	국고	1	9					